



# 정책

정책 번호:	P400-25-3	정책 유형:	재무
정책 제목:	미납으로 인한 주거용 수도 서비스 중단		
정책 설명:	미납으로 인한 주거용 수도 서비스 중단 승인 권한을 총괄 관리자에게 부여함		
승인 날짜:	9/7/2021	마지막 검토 날짜:	2025
승인 해결 번호:	46-21	마지막 검토 날짜:	2029
승인 해결 번호:	해당없음	승인 해결 번호:	해당없음

더블린 산 라몬 서비스 지구(Dublin San Ramon Services District)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수립합니다.

청구된 사용 요금 미납으로 인한 주거용 수도 서비스 중단을 총괄 관리자 또는 지정된 담당자가 승인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단수는 더블린 산 라몬 서비스 지구(DSRSD) 규정 제 1.50 장 요금 미납 조항과 더불어, 요금 미납으로 인한 주거용 수도 서비스 중단 시 상수도 시스템이 따라야 할 구체적인 요건을 규정한 '수도 차단 보호법(Water Shut-off Protection Act)'(캘리포니아 보건안전법 104편 12부 6장)에 따라 진행됩니다.

### 1. 정책의 목적

본 정책의 목적은 계정 소유자의 수도 요금 미납으로 인한 주거용 수도 서비스 중단 조건 및 절차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계정 소유자 및/또는 거주자에게 본 정책을 통해 통지하는 방법, 납부 약정 또는 대체 납부 일정을 얻는 방법, 수도 요금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소하는 방법, 그리고 미납으로 인해 중단된 서비스를 복구하는 방법이 포함됩니다.

### 2. 정책의 게시

본 정책은 지구 웹사이트에 게시됩니다. 또한 영어 외에도 스페인어, 중국어, 타갈로그어, 베트남어, 한국어, DSRSD 서비스 지역 거주 인구의 최소 10%가 사용하는 기타 언어로 제공될 예정입니다(현재 이 기준을 충족하는 언어 없음).

### 3. 공과금 납부 기한

- a. DSRSD 규정 §4.40.140에 따라, 청구서는 수령 즉시 납부해야 하며, 청구일로부터 30일 이후에는 납부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청구서 납부일은 계정 소유자에게 발송된 청구서에 인쇄되어 있습니다.
- b. 청구일로부터 30일이 지나도 공과금이 미납될 경우, 별도의 구역 조례 또는 결의안에 따라 정해진 연체료 및/또는 이자가 미납 금액에 추가되며, 계정 소유자에게 '연체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정책 번호: P400-25-3

정책 제목: 미납으로 인한 주거용 수도 서비스 중단

이 고지서에는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로부터 23일 이내에 납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 c. '연체 고지서' 발송 후 23일이 지나도 공과금이 미납될 경우, 계정 소유자에게 전화 연락을 시도합니다. 전화 연락 후에도 미납이 지속될 경우, '최종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이 고지서에는 발송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7일 이내에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 통지 없이 공과금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는 전화로 연락한 경우, 본 정책을 서면으로 제공하고 서비스 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입니다.

4. **납부 약정, 납부 유예, 대체 납부 일정**

'연체 통지서'를 받은 계정 소유자는 납부 약정, 일시적인 납부 유예 또는 필요한 금액을 납부하기 위한 대체 일정(이하 '납부 계획')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DSRSD는 미납 금액이 12개월 이내에 납부되는 한, 어떤 납부 약정을 수락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특수 의료 및 재정적 상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미납을 이유로 수도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 a. 부동산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임차인이 주치의의 진단서를 제출하여 서비스 중단이 생명을 위협하거나 서비스가 제공되는 건물 거주자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임을 증명하는 경우, 및
- b. 계정 소유자가 일반 청구 주기 내에 주거용 서비스 요금을 납부할 재정적 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가구 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현재 CalWORKS, CalFresh, 일반 지원, Medi-Cal, 보충 소득 보장/주정부 보충 지급 프로그램 또는 캘리포니아 여성, 영유아 및 아동을 위한 특별 영양 보충 프로그램 수혜자인 경우, 또는 계정 소유자가 가구의 연소득이 연방 빈곤선 기준의 200% 미만이라고 신고하는 경우, 계정 소유자는 납부 불능 상태로 간주됩니다.), 및
- c. 계정 소유자는 본 정책에 부합하는 납부 약정, 일시적 유예 또는 대체 납부 일정에 동의해야 합니다.

해당 지구는 제공하고 수락할 납부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납 잔액은 12개월 이내에 상환되어야 합니다. 총괄 관리자 또는 지정된 담당자가 개별 사례의 상황을 고려하여 고객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더 긴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2개월보다 긴 납부 약정이 승인될 수 있습니다.

정책 번호: P400-25-3	정책 제목: 미납으로 인한 주거용 수도 서비스 중단
------------------	------------------------------

계정 소유자가 60일 이상 납부 계획을 준수하지 않거나 납부 계획 기간 중에도 현재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부동산에 서비스 중단 최종 통지서를 게시한 후 주거용 수도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6. 1인 가구 거주 주택의 임대인 고객**

계정 소유자가 임대인이고 계정이 연체되어 서비스 중단 대상이 되는 경우, 지구는 서비스 중단 최소 10일 전에 서비스 주소로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는 서면 통지를 통해 거주자에게 서비스 중단 사실을 알리기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통지서에는 거주자가 연체된 계좌에 대한 미납금을 지불할 필요 없이 계좌 소유자가 될 권리가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수도 시스템은 세입자에게 연체 계좌의 등록 고객이 해당 주택의 임대인, 관리인 또는 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도 시스템은 세입자가 서비스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7. 다세대 가구 거주 주택의 임대인 고객**

계정이 다세대 주택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지구는 요금 미납을 이유로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DSRSD 규정 §4.40.120에 따라, 주거용 다세대 건물의 미납 공과금은 해당 부동산 소유주의 알라메다 카운티 또는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 재산세 고지서에 특별 부과금으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 거주자는 부동산 소유주의 연체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8. 고객의 공과금 청구 이의 제기 절차**

공과금 청구서의 요금 정확성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계정 소유자는 최초 청구서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과금 청구 및 고객 서비스 담당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계정 소유자는 이의 제기 또는 이의 신청 사유(예: 잘못된 수도 계량기 판독값)를 명시해야 합니다. 공과금 청구 및 고객 서비스 담당 관리자 또는 지정된 담당자는 잘못된 청구서를 정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계정 소유자는 이의 제기에 대한 결정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받게 됩니다. 공과금 청구 및 고객 서비스 담당 관리자 또는 지정된 담당자는 청구 금액의 정확성과 관련된 이의 신청을 조사하지만, 서비스 수준, 일반 요금 수준, 요금 변경 예정, 수도 자원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에 대한 이의 신청은 검토하지 않습니다.

계정 소유자가 공과금 청구 및 고객 서비스 담당 관리자 또는 지정된 담당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총괄 관리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총괄 관리자 또는 지정된 담당자는 청구 금액의 정확성을 검토할 수 있지만, 서비스 수준, 일반 요금 수준, 요금 변경 예정, 수도 자원 또는 이와 유사한 문제 등은 검토하지 않습니다.

총괄 관리자 또는 지정된 담당자는 청구 금액의 정확성을 검토할 수 있지만, 서비스 수준, 일반 요금 수준, 요금 변경 예정, 수도 자원 및 이와 유사한 사항에 관한 이 절차에 따른 이의 신청은 검토하지 않습니다.

정책 번호: P400-25-3

정책 제목: 미납으로 인한 주거용 수도 서비스 중단

9. 고지서에 대해 DSRSD에 문의

계정 소유자는 925-828-8524로 전화하여 요금 미납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본 정책은 현재 유효하며 이사회에서 변경할 사항이 없습니다.	
현행 정책 연혁:	
채택일:	
9/7/2021	
검토한 위원회 또는 이사회:	날짜:
이사회	10/21/2025